

#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 (정용기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3914
------------	------

발의연월일 : 2016. 11. 28.

발 의 자 : 정용기 · 강석호 · 김현아

권석창 · 김성원 · 윤영석

윤한홍 · 정우택 · 강길부

윤종필 · 정병국 · 김승희

이주영 의원(13인)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교통유발부담금제도는 교통혼잡을 유발하는 시설물 소유자에게 원인자부담원칙에 따라 혼잡에 따른 사회적 비용의 일부를 부담시키는 제도임.

하지만 동일한 시설물이라 하더라도 지역별 교통여건의 차이에 따라 교통혼잡에 따른 사회적 비용의 차이가 발생함에도 불구하고, 현행 법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를 통해 교통유발부담금을 100분의 100의 범위에서 상향 조정만 할 수 있음.

이에 교통유발부담금을 부과 · 징수하는 개별 지방자치단체의 교통여건 등을 고려하여 조례를 통해 교통유발부담금을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하향 조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37조제2항).

법률 제 호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일부개정 법률안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7조제2항 중 “상향 조정”을 “상향하거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하향 조정”으로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37조(부담금의 산정기준) ①          (생 략)</p> <p>② 제1항에 따른 단위부담금과 교통유발계수는 이용자 수, 매출액, 교통혼잡 정도 또는 시설물의 용도 등을 고려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되, 시장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설물의 위치 · 규모 · 특성 등을 고려하여 단위부담금과 교통유발계수를 100분의 100의 범위에서 <u>상향 조정</u> 할 수 있다.</p>	<p>제37조(부담금의 산정기준) ①          (현행과 같음)</p> <p>② -----          -----  <u>상향하거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하향 조정-----.</u></p>